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3조(가로명선정과 고시) ①(생략)	제3조(가로명선정과 고시) ①(현행과 같음)		
② 시장은 제1항의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후 <u>시지방의회(지방의회 구성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	②		
			
			
			
			<u>시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

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5
의결 년월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출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관내 음식점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한 음식점 제공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시민편의 제공
-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증대

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업무)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고 “제6항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시민을 위한 음식점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3조(업무) ①~⑤(생략)		제3조(업무) ①~⑤(현행과 같음)	
⑥ 기타 시민회관 설치목적에 따른 제업무		⑥ 시민을 위한 예식장 사업	
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	⑦ 기타 시민회관 설치목적에 따른 제업무	
		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

부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6
의 결	93. 12. 24
년 월 일	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사유

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

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보증금) ①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0%를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민을 위한 예식장사업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(별표) 중 제3호 부대시설 사용금의 기타란 중 “라호”를 “별지1”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